


2026년 재활용품 공개매각(단가계약)
과 업 지 시 서

2026. 5.

 **파 주 시**
파주시 환경관리센터
환경에너지솔루션(주)

2026년 재활용품 매각(단가계약) 과업지시서

1. 과업의 목적

- 가. 파주시에서 발생한 재활용의 품목별 선별품에 대한 발주자와 매각 업체 상호 간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하고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나. 본 재활용품 매각 단가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파주시 환경관리센터 재활용선별장과 (주)세아환경, (주)이룸, 영원환경(주), (주)푸른솔, (주)더조은환경, (주)진환경, (주)클린환경, (주)늘푸른환경, 용금환경, (주)크린라이프, (주)하나환경, (주)한빛환경, (주)에이치투테크 등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등(이하 “청소대행업체”라 한다)에서 수거된 재활용품에 대하여 적정 처리업체에 판매함에 그 목적이 있음.
- 다. 본 과업을 발주하는 파주시 환경관리센터 운영사인 환경에너지솔루션(주)를 “발주자”라 하고 과업을 수탁받은 개인·법인 등을 “계약상대자”라 한다.

2. 과업의 내용

- 가. 과업명 : 2026년도 재활용품 매각
- 나. 과업기간 : 2026. 06. 01 ~ 2027. 04. 30.
- ※ 매각되는 재활용품의 과업물량은 예상 발생량으로 증감이 있더라도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용하고 계약기간 종료와 함께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 (단, 계약 종료일까지 다음 계약 업체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계약 전까지 한시적으로 동일 조건으로 연장할 수 있다.)

3. 과업의 수행 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근거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31조의5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나. 재활용품을 상차·운반 및 선별할 수 있는 시설과 차량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선별 후 발생하는 잔재폐기물을 적법·안정적으로 처리 가능한 업체
- ※ “발주자”는 과업기간 “계약상대자”가 입찰 참여 시 제출한 “재활용품 처리·운반 공정 계획서”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계약상대자”의 공정 검수를 실시하여 재활용품을 적법하게 처리하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처리·운반 공정 계획서의 공정과 다를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처리·운반 공정 계획서에 맞게 이를 수용한다.

4. 과업의 조건

가. 재활용품 수거 장소 : 파주시 환경관리센터 재활용선별장 및 각 청소대행업체.

나. 수거 주기 : 재활용품은 주 2회 이상 재활용품 수거 장소에서 직접 상차하여 인수한다.

※ 매각 대상 물량의 처리량 증가로 인한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상호협약하여 추가 수거 할 수 있다.

다. 매각 대상품은 “계약상대자”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처리시설에서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 사항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시설고장 또는 가동중단 등의 사유로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발주자”에 게 공문으로 사전에 통보하고 별도 처리대책을 마련하여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5. 계량 및 검수

가. 매각물량에 대한 계량은 파주시 환경관리센터내 지정 계량대를 이용한다.

※ 단, 지정 계량대 고장시 검인받은 계량소에서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계량하여, 계량표를 파주시 환경관리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량시 파주시 환경관리센터에서 발급한 계량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며 계량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반출할 경우 무단반출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다. 계량카드에 의한 계량 후 직원에게 재활용품 확인 및 계량증명서를 발부 받지 않고 반출시에는 무단반출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6. 수거 운반 및 대금 정산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수거 장소에 선별 보관중인 재활용품을 직접 상차하여 운송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처리·운반 공정 계획서를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각 품목의 운반에 대하여 필요시 암물박스 등은 각 품목 “계약상대자”에서 지정된 수거 장소에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 수거운반 주기를 절대 준수하고 수거하지 못할 시 사전에 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

라. “발주자” 및 “청소대행업체”는 “계약상대자”에 재활용품 수거(반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48시간 이내에 수거하여야 하고 하며 불가항력적 사유 발생 시 즉각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마. “계약상대자”는 수거된 재활용품에 이물질 혼입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수거하여야 하며 품목별 파손 제품 중 재활용 가능 제품에 대해서도 수거를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상 반입·처리가 금지되는 물질 또는 시설 안전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물질이 포함된 경우에는 즉시 “발주자”에 통보(증빙자료 포함)하고 “발주자”와 협의한 조치에 따른다.
- 바. 대금정산은 1개월 단위(매월말 기준)로 매각물량에 대해서 계량증명서(전표) 등 “발주자”가 요청하는 증빙자료를 익월 5일까지 제출하고, 재활용품 매각대금 결제는 1개월 단위로 파주시청에서 발행되는 고지서의 입금계좌에 납부일까지 입금하여야 한다.
(파주시에서 세입금 총괄 관리를 하여 체납시 행정기관 조치에 의한 불이익이 발생)

7. 계약 해지

- 가. “발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기간 만료 전 이라도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손실이 있더라도 “발주자”가 보상하지 아니한다.
- 1) “발주자”의 정당한 과업 및 행정지시에 “계약상대자”가 불응하거나, “계약상대자”의 불법·부당 행위 및 이에 준하는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2) 매각대상 물량을 임의로 하도급하여 처리하거나 지정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
 - 3)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 4) “계약상대자”의 사업계획 등의 변경으로 처리물량을 수탁할 수 없을 경우
 - 5) “계약상대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매각대금을 축소하거나 무단반출한 경우
 - 6) 천재지변, 기타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 등으로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7) “발주자”과 “계약상대자” 상호 합의가 있을 경우
 - 8)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수거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 나. “발주자”의 수 회의 과업 이행 요청에도 미이행(상차 미이행 및 연락 두절)이 발생할 경우 발주자는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음.

과업 불이행 횟수	1회	2회	3회 이상
조치 내용	주의	경고	계약 해지 및 입찰참여 제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다. 매각물량에 대한 대금을 연체(1개월 이상)하여 미납이 발생할 경우

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 계약이행보증금은 전액 귀속된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의 처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2)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상대자”는 「파주시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하는 내용을 준용하여 안전 의무 등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9. 기타 사항

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및 관련 규칙 등 준용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 “발주자”의 합리적인 견해에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용보관량, 처리 규정을 준수하고 인허가 변경 시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규 위반에 따른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에 대하여 양도, 담보제공, 하도급 등 권리·의무를 설정할 수 없다.

라. “계약상대자”는 수거·운반·처리되는 재활용품을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행위를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발생하는 모든 법적·행정적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발주자는 이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반입된 재활용품으로 인한 2차 환경오염 및 민원발생 시 즉시 조치하고 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바. “계약상대자”는 인員 및 장비를 관리 또는 통제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조치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시 사고에 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사. “발주자”는 본 계약과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 추가 과업지시를 할 수 있으며 본 과업 시행중에 예기치 못한 사고 또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시는

지체없이 “발주자”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아. 계약의 종료 후에는 사용했던 계량카드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자.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 자료나 서류·장부 등 요구시 제출하여야 한다.

차.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행하도록 한다.